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. 12. 21 선고 2022가단1038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강오

변 론 종 결 2022. 11. 30.

판 결 선 고 2022. 12. 21.

주 문

1. 피고와 B(C생) 사이에 2020. 11. 18. 및 2021. 3. 15.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6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B의 부동산 매도

- 1) B는 2020. 9. 28. 주식회사 D(이하 'D'라 한다)와, 김해시 E, F에 있는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1,070,000,000원에,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400,000,000원으로 정하여 위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(이하 위 각 매매목적물을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하고, 위 각 매매계약을 '이 사건 각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- 2) 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20. 9. 28. D로부터 계약금 147,000,000원(= 107,000,000원 + 40,000,000원)을 지급받았고, 2020. 11. 16. 잔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253,183,284원을 지급받은 후, 2020. 11. 16. D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원고의 B에 대한 채권

- 1) B는 2021. 2. 1.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할 세액을 288,270,421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, 원고(김해세무서장)는 2021. 4. 9. B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,026,880원(가산세 포함)을 경정·고지하였다.
- 2) 원고의 2022. 3. 경을 기준으로 한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위 고지금액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319,757,020원이다.

다.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등

- 1) B는 1977. 8. 19. 피고와 혼인하였고, 2021. 9. 30.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21호협32 협의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하였다.
- 2) B는 피고에게 2020. 11. 18. 경 230,000,000원, 2021. 3. 15. 경 37,000,000원을 각 지급(이하 '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'라 한다)하였다.

라. B의 채무초과

1) B는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제12호증, 을 제5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27905 판결, 1997. 10. 28. 선고 97다34334, 2001. 3. 23.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).

2)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, B가 2020. 9. 28. D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0. 11. 30.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,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B의 이 사건 각 금원지급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원고가 B의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가 B와 피고 사이의 각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, 피고는 위 금원지급 행위는 B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2) 살피건대,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에게 2020. 11. 18.경 230,000,000원,

2021. 3. 15.경 37,000,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지급된 금원은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.

3) 피고는 B가 오래 전부터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고,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재산분할로써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피고와 B가 2021. 9. 30.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, 을 제1, 제4,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B가 피고와 이혼하기 약 20여년 전부터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주장사실만으로 B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원고와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로써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, 갑 제6 내지 제24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B는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 이전에도 2020. 10. 8. 및 같은 달 26. 피고가 매수한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8,500,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던 점, ② B와 피고가 이혼할 당시 B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293,026,880원을 포함하여 약 350,00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,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약 180,000,000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.

4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의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피고와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, 이로 인하여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, B의 위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의 원인이 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합계 26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경훈